

# 덕진면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덕진면
- 감사기간 : 2018. 09. 11. ~ 2018. 09. 14. (4일간)
- 대상기간 : 2016. 09. 27. ~ 2018. 09. 10. (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10.~2018.8.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 지급을 1일~5일까지 지연 지급하여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9조】</li> </ul>
	당직(일직) 수당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실제 근무일수가 3일임에도 불구하고 5일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2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1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또한 ○○○은 실제 1일 근무하였음에도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3조】</li> </ul>
	병가사용 및 승인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는 병가신청 1일 전에 병가사유를 단순 “병원진료”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올려 면장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 2016~2017년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70,070원/1일, ○○○ 92,950원/2일)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및 제21조】</li> </ul>
세무분야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암군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신고 납부한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14건 3,098,480원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재무과-17115(2016.7.13.)호, 18006(2017.7.7.), 17356(2018.7.3.)】</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취득세(건축물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대장에 누락된 덕진리 284-1번지 건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산세(건축물분) 2014년~2018년 190,980원 누락 등 과세 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재무과-18402(2016.7.27.)호, 14643(2017.6.8.), 16365(2018.6.24.)】</li> </ul>
	취득세(이륜차) 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취득세 2건 98,730원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지방세법 제20조】</li> </ul>
복지분야	의료급여증 회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제15조(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및 2018년 의료급여 사업안내(수급자 자격관리)에 의하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회수, 폐기 조치하여야 하나, 수급권자 변동(중지, 사망)이 발생한 덕진면 내촌길 25-3 ◉◉◉ 28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증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의료급여증 회수 및 폐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제15조(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및 2018년 의료급여 사업안내(수급자 자격관리)】</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 위반사항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검토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14건, 2017년 13건, 2018년 12건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시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7조 2항 1호(축산식품부령)】</li> </ul>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조사대상 130㏊, 2017년도 552필지 등에 대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 필지별·주체별 조사대상지를 선정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농지이용실태조사표를 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조사 결과내용(복명서 등)없이, 형식적으로 조사하여 농지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2항, 제54조】</li> </ul>
	2016~2018년도 가축통계조사 업무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통계조사시 조사대상, 조사 방법, 조사 내용 등 가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가축 통계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군에 보고하는 등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통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농업통계 조사규칙 제3조】</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진 장선2리 교행지 설치공사』를 준공하면서 본 설계내역에 부직포 포설비용을 반영하였으나 미 시공한 채로 준공처리됨으로써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76 천원의 사업비를 과다 집행함</li> </ul> <p>【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제2항, 공사감독자 업무지침】</p>
	환경 관리비 정산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진면 청리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 관리비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하였으나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 내역을 미 확인하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빌주 부서에는 준공 전 환경관리비 정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310천원의 사업비를 과다 집행함</li> </ul> <p>【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p>